

다. 과세형평성 저해

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과세형평성이 매우 저해된다는 것이다. IBS 가산율이 최초로 적용된 1996년부터 이미 그 가산율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수많은 소송사례를 낳았다.⁷⁾ 대법원에서는 “‘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’의 일반적인 개념,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,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화,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·관리할 수 있고,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·유기적으로 제어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”이라며 그 기준에 대해 부분적이 나마 규정하는 판례를 남겼다.⁸⁾ 이후 IBS에 대한 지방세 가산율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은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.

개정연도	가산율(%)	주요 내용
1996년	50	IBS 가산율 최초 제정
1999년	50	IBS 시설 → 빌딩자동화시설로 변경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: 공조, 전기, 조명, 방범,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
2001년	35	가산율 인하(50→35) 개별관리 및 단순중앙관리시스템 제외 문구 삽입
2006년	3가지: 15 4가지: 20 5가지 이상: 25	가산율 인하(35→15/20/25)
2009년		가산율 인하(15/20/25→5/10)
2015년		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문구 삽입
2017년	4가지: 5 5가지 이상: 10	빌딩자동화시설 → IBS 시설로 변경 IBS 시설의 정의: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화, 방범, 방재, 전기,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
2018년		“방재에 방화를 포함한다” 문구 삽입
2024년		“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~”문구 삽입
2025년		“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~”문구 삭제

7) 전병역, ‘인텔리전트빌딩 세금가산율’ 적용 말썽, 경향신문, 2001. 11. 7.

<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0111070035171>

8)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다수